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5
----------	-----

제출년월일 : 2023년 2월 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조정하여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는 물류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이 맡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함(안 제3조제2항)

나. 당연직 위원 수를 8명에서 6명으로 축소함(안 제3조제3항)

- 당연직 위원에서 행정1부시장, 환경기획관, 정책기획관을 제외하고 경제일자리기획관을 추가

다.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성별 균형 참여 규정을 일부 반영함(안 제3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2. 11. 10. ~ 11. 30.)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주택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교통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정책기획관”을 “주택공급기획관, 교통기획관, 경제일자리기획관”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제2항 중 “없는 때에는 그”를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로, “없는 때에는 위원장”을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u>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u></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p>1. 도시교통실장, 도시계획국장, 주택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교통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u>정책기획관</u></p> <p>2. (생략)</p> <p>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생략)</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u>없는 때에는</u>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p>	<p>제3조(구성) ① ----- ----- -----</p> <p>--. <u>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u></p> <p>② <u>위원장은 시장이 말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 ---</p> <p>1. ----- <u>주택공급기획관, 교통기획관, 경제일자리기획관</u></p> <p>2. (현행과 같음)</p> <p>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없거나</u> <u>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u> -----</p>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없거나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장-----

-.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 없음

4. 작성자 : 도시교통실 물류정책과 이정윤 (02-2133-4093)